# '10년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시업 과제수행 계약서

o 과제 범위: R&D완료단계

ㅇ 지원 과제 : 반도체용 플라즈마 챔버 최적화 설계 및 제작

○ 갑(甲): (주) 아토

을(乙): 아인특허법률사무소

2010년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이하 "특허전략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갑(甲)과 을(乙)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2010년 10월 13일

갑(甲)	(주)아 토 대표이사 이 문 용 (인)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2다 302호
을(乙)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남 승 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9 서전빌딩 12층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10년도 "특허전략지원사업" 이행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 및 갑(甲)과 을(乙)간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甲)과 을(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 히 이행하고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기간 동안 갑(甲)과 을(乙)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범위 및 내용)

본 계약은 특허전략지원사업의 갑(甲)에 의해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해 을(乙)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및 그에 따른 갑(甲), 을(乙)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그 범위로 한다.

## 제4조(사업수행기간)

2010년 07월 05일부터 2010년 09월 12일까지로 한다.

### 제5조(사업수행)

①갑(甲)과 을(乙)은 본 특허전략지원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의무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갑(甲)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 1.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매칭비용의 지불



- 2.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허획득전략수립을 적극 지 원
- 3. R&D특허센터(이하 '공공발주기관'이라 함)가 본 지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갑(甲)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협조를 요청 시 갑(甲)은 공공발주기관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을(乙)은 본 과제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전담인력은 갑(甲)을 포함한 타기관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단, 업무 진행상 필요한 경우 공공발주기관은 을(乙)에게 다음 각호의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乙)은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1. 본 계약서에 첨부된 과제수행계획서의 이행
- 2. 지원과제의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및 논문 등 문헌정보 분석, 통계 및 보고서 작성
- 3. 제2호의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 권리성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4. 갑(甲)의 특허획득 및 R&D전략수립 지원
- 5. 기타 갑(甲)에 필요한 사항
- ④을(乙)은 본 계약에 의한 특허전략지원사업의 수행시 을(乙)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갑(甲)의 손해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으 로서, 갑(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하여야 갑(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의 범위는 보증된 범위로 한정되 지 않으며 을(乙)은 보증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첨단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첨단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 갑(甲)과 을(乙)은 공공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공공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甲)과 을 (乙)에 대한 통지로써 공공발주기관과 갑(甲) 간의 계약 또는 공공발주기관과 을(乙) 간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1. 을(乙)이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2. 을(乙)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전략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을(乙)의 태만으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4. 을(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을(乙)의 등록인력이 아닌 타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6. 을(乙)의 등록인력 중 특허전략지원사업 관련 교육 미이수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7. 을(乙)이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 또는 사업수행

(II)

-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공공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 8. 을(乙)이 진도보고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공발주기관으로 부터 경고가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 9. 을(乙)이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갑(甲)의 도산 또는 폐업 등으로 본 특허전략지원사업의 실 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11.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 갑(甲)의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13. 갑(甲)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14. 갑(甲)이 신청기술과 상이한 기술내용으로 본 사업을 요청하 거나 본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1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상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과 같이 을(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乙)은 공공발주기관에게 상기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을(乙)에 의하여 이미 작성된 결과물(완성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결과물은 공공발주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 제4항의 매칭비용은, 계약해지일

S. H.

현재의 잔액을 갑(甲)에게 반환한다.

③상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1호의 규정과 같이 갑(甲)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공발주기관은 과제수행일수를 계산하여 을(乙)에게는 그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갑(甲)에게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갑(甲)이 계약 체결 시 납입한 금액에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때 을(乙)에 의하여 이미 작성된 결과물(완성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결과물은 갑(甲), 공공발주기관에게 제공되어야한다.

④상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과 같이 갑(甲)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甲)은 과제수행일수를 계산하여 을(乙)에게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을(乙)은 공공발주기관에게 상기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선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발주기관은 상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甲)에게 제6조 제4항의 매칭비용을 돌려주지 아니한다. 이 때 을(乙)에 의하여 이미 산출된 결과물은 공공발주기관에게 제공 및 귀속되어야 한다.

⑤갑(甲)과 을(乙)이 구두 또는 서류로 비밀계약을 체결하여 의도적으로 「첨단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고자 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공공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공발주기관은 상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甲)에게 제6조 제4항의 매칭비용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을(乙)은 제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지급

받은 비용 전액을 공공발주기관에게 반환한다. 이 때 을(乙)에 의하여 이미 산출된 결과물은 공공발주기관에게 제공 및 귀속되어야 한다.

### 제7조(저작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을(乙)이 공공발주기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공공발주기관이 수립한 특허전략 및 이를 구체화한 문서, 기타 본 사업의 결과물과관련한 저작권 등의 기타 일체의 권리는 공공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을(乙)은 공공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등을 할 수 없다. 이는 본 계약이 제7조에 의하여 해제·해지되는경우 기타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같다. 단, 상기한 기타 일체의 권리 중 특허전략지원사업의 결과에 의해 출원한 특허및 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갑(甲)에게 귀속한다.

②을(乙)과 공공발주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갑(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을(乙)은 사업 수행 시 저작권,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침해 시에는 을(乙)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9조(양도금지)

을(乙)은 갑(甲)과 공공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 제10조(비밀유지)

①을(乙)은 특허전략지원사업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종료 후에도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갑(甲)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열람 또는 복사 등을 포함) 및 을(乙)의 이익 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②을(乙)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계약종료 후 및 전략수립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 후에 관련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을(乙)은 제5조 제3항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과 같이 을(乙)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위 사람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乙)은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공발주기관은 비밀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甲)과 협의하여 을(乙)과 별도로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⑤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한 관계자는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1조(계약의 해석과 보완)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전략지원사업 운영지침」과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참고하거나 갑(甲)과 을(乙)이 공공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2조(완전합의)

- ① 본 계약체결 전까지 당사자간에 행해진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는 그것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인 한 모두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 계약 체결 전까지 당사자간에 교부된 모든 서면 및 구두 의 진술은 본 계약의 해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본 계약조항의 변경, 추가 또는 삭제는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제13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이유여하에 관계 없이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世

## 제14조(소송의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갑(甲)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甲)','을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한다.

갑(甲), 을(乙)은 [ 2010 ]. [ 10 ]. [ 13 ]. 위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